

[별지 제16호서식]

특별진급 심사의결서(제29조제3항관련)

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진급 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심사의결한다.

의결사항

수방 진급임용대상자를 홍길동의 2명으로 한다.

20 . . .

의무소방대 운영위원회

위 원 장	계 급	성 명	인
위 원	"	"	인
위 원	"	"	인
위 원	"	"	인
위 원	"	"	인
위 원	"	"	인
위 원	"	"	인

210mm×297mm(일반용지60g/m²)